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90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 강득구·송재봉·김준형

전현희 • 박홍배 • 추미애

정혜경 • 전재수 • 김병주

윤후덕 • 이용우 • 채현일

이강일 · 김준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원학교에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교육을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소년원학교는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과 전문성 있는 교원의 부족 등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법률 제 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 청할 수 있다.
- ③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학교의	설치 • 운영)	(생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u>①</u>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ㆍ
			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
			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u> <신 설></u>			③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